

瑞山市公園墓地設置 및 使用條例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7.10.24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1997.10.25
- 라. 上程日字 : 1997.11. 1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家庭福祉課長 趙貞順)

가. 提案理由

- 현재 협오시설로 인식되어진 서산시공원묘지에 대하여 공원화사업추진과 더불어 공원개념과 향토색을 지닐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고코자함.
- 현행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현실화와 생활보호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가. 공원묘지 명칭은 「도비공원」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묘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묘지 등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계약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용자격을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규정함(안 제5조).

마. 묘지면적은 1기당 4.9평방미터이하로 규정함(안 제6조).

바. 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조례 전문개정안의 취지는 공원묘지 명칭을 공원개념과 향토색을 지닐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힘오시설로의 인식을 다소나마 불식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 제고코자하며, 현행 사용료 및 관리비의 현실화 사용료의 감면을 구체적 명시하고,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그동안의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음.
- 조례안 제2조(명칭및위치)에서 명칭의 변경은 집행부에서 힘오시설로 인식되어진 묘지의 개념을 없애고, 향토색과 공원의 개념으로 부각시키고자 지난 '96.8.12~8.30일까지 명칭을 공모한 결과에 따라, 서산시조정위원회에서 「도비공원」으로 명칭이 결정되어 최종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지난 9.18일 서산시 부서면 취평1리 440번지

이장단 회장 박광열외 6인으로부터 공원묘지 명칭 변경에 도비의 명칭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를 집행부 및 본의회에 건의 접수한바 있어, 그 답변으로 위 절차를 회신한바 명칭 변경은 부석면민의 정서를 고려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①항의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에서 사용기간 「30년」의 명기는 묘지 사용 기간의 제한에 관련하여 매장 행위가 끝난 묘지는 묘지가택권을 갖는 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간을 명기한 것은 법률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기간 명시는 보건복지부법령안 입법에고(보건복지부공고 제1997-71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관보제13710호('97.8.18) 주요 골자 " 라" 항의 「매장기간」 법률 확정후에 시장.군수에 위임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안 제5조 3항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안 제10조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의 설명이 필요하며,
- 기타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음

5. 討 論 : 없음

6. 少數意見 : 없음

7. 審査結果 : 수정 가결

※ 수정안 : 별첨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에서 【별표1】의 명칭중 "도비공원"을 "서산시공원묘지"로 한다.
- 제8조1항 "묘지등의 기본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에서 "30년을 기준으로 하고"를 "15년을 기준으로 하고"로 한다.
- 부칙 제2조중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에 의하여 조례 시행일 이전 현재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는 법표1과 같다.</p> <p>【법표1】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와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명 칭</th> <th>위 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서 산 시 공설묘지</td> <td><u>도비공원</u></td> <td>생 락</td> <td></td> </tr> <tr> <td>서 산 시 공설납관당</td> <td>서 산 시 공설납관당</td> <td>생 락</td> <td></td> </tr> </tbody> </table> <p>제8조(사용기간) ① 묘지등의 기본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생 락 ③ 생 락</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입) (생 락)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것으로 본다.</p>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서 산 시 공설묘지	<u>도비공원</u>	생 락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생 락		<p>제2조(명칭 및 위치) (원안과 같음)</p> <p>【법표1】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와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명 칭</th> <th>위 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서 산 시 공설묘지</td> <td><u>서 산 시 공원묘지</u></td> <td>원안과 같 음</td> <td></td> </tr> <tr> <td>서 산 시 공설납관당</td> <td>서 산 시 공설납관당</td> <td>원안과 같 음</td> <td></td> </tr> </tbody> </table> <p>제8조(사용기간) ① 묘지등의 기본 사용기간은 <u>15년을 기준으로 하고</u>, 15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입) (원안과 같음)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u>조례시행입 이전 현재 재계약된것으로 본다.</u></p>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서 산 시 공설묘지	<u>서 산 시 공원묘지</u>	원안과 같 음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원안과 같 음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서 산 시 공설묘지	<u>도비공원</u>	생 락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생 락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서 산 시 공설묘지	<u>서 산 시 공원묘지</u>	원안과 같 음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서 산 시 공설납관당	원안과 같 음																							

제안번호	제 163 호
의결년월일	1997. . . (제 회)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10. 14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1997. 10. 24

의안 번호	163
----------	-----

제 출 자 : 서산시장

개정이유

- 현재 협오시설로 인식되어진 서산시 공원묘지에 대하여 공원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원개념과 향토색을 지닐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재고코자 함.
- 현행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현실화와 생활보호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등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용기간등을 정하여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공원묘지 명칭을 「도비공원」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묘지등의 관리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묘지등의 사용을 하고자하는 경우 사용계약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사용 자격을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규정함(안 제5조).
- 마. 묘지면적을 1기당 4.9평방미터이하로 규정함(안 제6조).
- 바. 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묘지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참고사항

- 가. 관련법 발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 지방자치법제135조)
- 나. 예산상황
 - . 인건비
 - . 조성비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이하 “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 ①묘지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계약) ①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안에 시체(사태포함)를 매장하고자 하는자
2. 공설납골당안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자

②제1항의 사용계약은 이미 그 사용계약을 한 장소에 맞대어 차례로 이를 계약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의 사용자가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후 일정규격의 납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치할 납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제5조(사용자격)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을 사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묘지의 면적등) ①묘지의 면적은 1기당 4.9평방미터이하로 한다.

②묘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7조(분묘의 형태등) ①분묘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묘지의 앞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등을 표기한 묘비를 세워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기간) ①묘지등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계약은 묘지는 사용계약 기간 만료 후 3년이내에, 납골당은 사용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연장사용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없이 연장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등) ①묘지등의 사용자는 사용계약시 별표 2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1항에 의거 연장사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3할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묘지등의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자는 전액
2. 지역사회 발전에 헌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50%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안에 따라 감면

제11조(계약의 해지) 묘지등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사용계약을 취소하고 개장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계약을 한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을 때
4. 묘지의 형태를 손상하였을 때

5. 법령, 조례, 규칙,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묘지등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서산시 공설묘지	도 비 공 원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신 25 산 32-1 산 32-2 산 32-6 산 33 산 34	
서산시 공설납골당	서산시 공설납골당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 32-1	

[별표2]

사용료.관리비.매장작업료

(단위 : 원)

구분	사 용 료				관 리 비				매 장 작 업 료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공 설 묘 지	67,000	95,000	123,000	150,000	100,000	141,000	183,000	225,000	162,000	175,000	187,000	200,000
	50,000				30,000							
	50,000				30,000							
	50,000				20,000							
공 설	50,000				30,000							
납골당	50,000				20,000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발의일자 : 1997. 11. 3

발 의 자 : 리희찬의원외 1인

의안 번호	
----------	--

1. 번안동의 이유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97. 11. 1) 의결로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2조(명칭 및 위치)중 「법표1」의 명칭을 부겍하였으나 이는 조례안 심사 절차에 부합되지 않아 번안코자 하는것임.

2. 주요겍자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번안함.

당	초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등의 명칭과 위치는 법표1과 같다'에서 「법표1」의 명칭중 '도비공원'을 부겍	

변				경				안			
○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는 법표 1과 같다.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서	산	시	공	설	묘			서	산	시	공
원	묘	지		지				원	묘	지	